

2024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합동분과 제1차 회의록

- 회의일시 : 2024. 1. 15.(월), 14:00
-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출석위원 : 김영운(위원장), 김삼기, 김종대, 성애순, 최현, 정성숙, 조남규, 성기숙, 신타근, 서도식, 김정희, 이은주, 임승택, 진명(정혜린), 심연옥, 장남원, 석대권, 천혜숙, 배영동, 황경숙, 헤일(이승우), 이순녀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시·도지사 추천 접수(전년도)	○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
↓	
○ 관계전문가 검토(전년도)	○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-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
↓	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※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
↓	
○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	○ 전승가치(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, 대표성 등) 및 전승환경(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) 등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- 종목만 지정 시 : 지정 예고 여부 검토 -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시 : 인정 절차 진행 ※ 보유자(단체)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
↓	
○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↓	
○ 종목 지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	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, 신청서 접수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실시	○ 서면조사(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1단계 조사 결과 검토,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2단계) 실시	○ 현장조사(실연) 및 면담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2단계 조사 결과 검토,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3단계) 실시	○ 심층 기량조사(실연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3단계 조사 결과 검토,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↓	
○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
↓	
○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-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- 인정서 교부, 전승지원금 지급

목 차

【검토사항】

1	2024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조사 계획 검토	공개
---	--	----

【보고사항】

1	2024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보고	공개
2	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결과 보고	공개
3	국가유산 중점 분야(무형유산)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고	공개

검 토 사 항

1. 2024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조사 계획 검토

가. 제안사항

2024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(보유자, 전승교육사) 인정조사 계획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24년 실시 예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(보유자, 전승교육사) 인정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(1) 추진 배경

- 2024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(보유자, 전승교육사) 인정조사 계획 수립 및 공지 예정('24.1월)
- * 관련근거 :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 및 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(2) 추진 방침

-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조사
 - 지방자치단체 신규 수요조사 추천 종목
-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·전승교육사 인정조사
 - 2023년 인정조사 종목 중 미완료 종목
 - 보유자 부재 종목, 보유자 인정조사 10개년 계획 우선 고려
- 명예보유자 인정
 -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한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(조사계획과 별도로 수시 추진)

(3) 세부내용

【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조사 대상 검토】

구 분	대 상
신규 종목 지정 (8종목)	선화, 매사냥, 울산쇠부리소리, 한글서예, 가야진용신제, 소싸움 태권도, 사찰음식

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 검토】

구 분	대 상
전승자 인정 조사 (21종목)	보유자 (13종목)
	전승교육사 (7종목)
	보유단체 (1종목)
	(예능 5) <u>대금정악</u> , <u>동래야류</u> , <u>가야금산조</u> 및 <u>병창(병창)</u> , <u>가사</u> , <u>판소리(심청가)</u> (기술 8) <u>갯일(입자)</u> , <u>갯일(총모자)</u> , <u>갯일(양태)</u> , <u>망건장</u> , <u>대목장</u> , <u>자수장</u> , <u>완초장</u> , <u>궁중채화</u> (예능 4) <u>봉산탈춤</u> , <u>남사당놀이(어름_줄타기)</u> , <u>남사당놀이(덜미_꼭두각시놀음)</u> , <u>가산오광대</u> (기술 2) <u>변와장</u> , <u>유기장(주물유기)</u> (지식 1) <u>경산자인단오제(여원무)</u> <u>생전예수재</u>

* 밑줄은 조사 진행이 미완료된 종목임

** ‘생전예수재’는 종목의 지정가치 의결에 따른 보유단체 인정조사 대상임

라. 검토사항

- 2024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 조사 대상종목 검토

마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지정조사 대상은 ‘선화, 매사냥, 울산쇠부리소리, 한글서예, 가야진용신제, 소싸움, 태권도, 사찰음식’으로 함
 - 보유자 인정조사 대상은 ‘대금정악, 동래야류, 가야금산조 및 병창(병창), 가사, 판소리(심청가), 갯일(입자), 갯일(총모자), 갯일(양태), 망건장, 대목장, 자수장, 완초장, 궁중채화’로 함
 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은 ‘봉산탈춤, 남사당놀이(어름_줄타기), 남사당놀이(덜미_꼭두각시놀음), 가산오광대, 변와장, 유기장(주물유기), 경산자

인단오제(여원무)'로 함

- 보유단체 인정조사 대상은 '생전예수재'로 함

○ 의결정족사항: 출석 22명, 가결 22명

바. 특이사항

○ 없음

보 고 사 항

1. 2024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보고

가. 보고사항

2024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* 관련근거 :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나. 보고사유

- 2024년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전승교육사 및 보유단체, 우수 이수자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 운영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지급(매월)

- 지원대상 :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
- 지급기준
 - 보유자 : 월 2,000,000원 (증 500,000원)
 - 전승교육사 : 월 900,000원
 - 보유단체
 - 보유단체 : 월 3,800,000원 (증 200,000원)
 -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: 월 5,800,000원 (증 300,000원)

2) 우수 이수자 장려금(매월) * 2024년 신설

- 지원대상 :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 3년 이상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,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
- 지급기준 : 월 500,000원 (개인당 우수 이수자 선정 최소 1회 2년간)

3) 전수장학금(매월)

- 지원대상 : 취약종목 보유자가 추천한 전수장학생
 - 전수장학생 선정 기준 :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 추천, 선발 후 5년 지원
- 지급기준 : 월 300,000원

4) 전승활동 장려금(연 1회)

- 지원대상 : 연간 전승활동 실적 등이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개인
종목의 보유자·전승교육사와 보유단체
- 전승활동 실적점검 기간 : '24. 1.1 ~ '24. 10. 31
- 전수교육 실적 반영 : '23. 1. 1 ~ 12. 31.
- 평가일 및 지급시기 : '24. 12월
- 지급기준 : 종목 특성 및 전승실적(활동, 교육)에 따라 차등 지급

구분	분야	평가 사항
개인 종목	공연·예술	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등 * 일반종목과 취약종목을 구별하여 별도 범주 내에서 평가
	기술·생활관습	
단체 종목	공연·예술	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③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
	의식·놀이·무예· 기술·생활관습	

5) 취약종목 추가 지원금(연 1회)

- 지원대상 : 전승취약종목 보유자·전승교육사, 이수자(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없는 종목)
- 전승취약종목(기준일 : '23년 4월, 3년 주기 재선정)

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 ('23.4월 선정)

- 전통·공연·예술(5종목) : 서도소리, 가곡, 가사, 줄타기, 발탈
- 전통기술(20종목) : 갓질, 한산모시짜기, 매듭장, 나주의 섯골나이, 낙죽장, 조각장, 악기장(편종·편경 제작), 장도장, 두석장, 백동연죽장, 망건장, 탕건장, 바디장, 전통장, 배첩장, 화각장, 윤도장, 선자장, 낙화장, 사경장

- 지원방법
- 전승취약종목에 소속된 보유자·전승교육사·이수자가 전승활동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하고 적합성 검토를 거쳐 지원 상한액까지 연 1회 연말 지원
- (전승활동) 재료구입비용, 전시회·공연 개최비용 및 임차료, 교육시설 개보수비 등
- 지원기준

<단위 : 원>

구 분	보유자	전승교육사·이수자
지원 상한액	4,716,000	3,132,000

6) 특별지원금

○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

-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: 매월 1,000,000원
- 장례위로금 : 명예보유자·보유자(1,200,000원), 전승교육사(600,000원)
- 입원위로금 : 보유자(500,000원), 전승교육사(300,000원)/10일 이상 입원 시, 연 1회

7)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

- 법적근거 :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등
「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(무형원 훈령 제36호)
- 제한대상 :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우수 이수자, 전수장학생 등

라. 의결사항

- 원안 접수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22명, 원안 접수 22명

바. 특이사항

- 없음

2.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결과 보고

가. 보고사항

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추진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2023년 지정(인정)조사 추진 실적

	위원회 검토·심의 결과	위원회 검토·심의 전 (지정·인정 조사 완료·진행)
종목지정 (6종목)	○지정완료(5) - 설과 대보름, 한식, 단오, 추석, 동지	○전승자 인정(1) - 생전예수재
보유자 인정조사 (11종목)	○인정완료(2) - 경기민요, 악기장(현악기) ○인정부결(1) - 대금산조	○조사 미완료(6) - 동래야류, 대금정악, 갯일(양태), 갯일(입자), 갯일(충모자), 망건장 ○기타(2) - 옥장, 칠장 *심의 예정
전승교육사 인정조사 (7종목)	○인정완료(4) - 이리농악, 수영야류, 승전무, 소반장 ○인정부결(1) - 위도띠뱃놀이	○조사 미완료(1) - 봉산탈춤 ○기타(1) - 양주소놀이굿 *보유단체 미신청

- 전승자 인정(총 16명)
 - 보유자 8명 인정(나전장3, 경기민요2, 악기장3)
 - 전승교육사 8명 인정(이리농악2, 승전무1, 수영야류3, 소반장1, 탕건장1)
 - * '나전장, 탕건장' 전승자 인정은 전년도 조사결과를 금년도에 심의(검토)한 결과임

- 명예보유자 인정(총3명)
 - 보유자→명예보유자(2명)
 - 전승교육사→명예보유자(1명)

라. 의결사항

- 원안 접수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22명, 원안 접수 22명

바. 특이사항

- 없음

3. 국가유산 중점 분야(무형유산)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고

가. 보고사항

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중점 분야(무형유산)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국가유산기본법 제정('23.5.16. / '24.5.17. 시행) 및 국가유산 체제 전환 비전 선포식('23.12.8.)에 따른 '무형유산 전승'의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전승교육사 인정 자격 개방

-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권한 부여에 따라 조사대상을 보유자 추천 이수자뿐만 아니라 일반 전승자까지 개방 추진

2)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제 도입

- 창극, 사물놀이 등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및 계획 수립
- 조사방식, 등록 기준, 보유자(단체) 인정여부, 지원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 개정 추진

3) 국립기관 전승 종목 지정

- 국립국악원, 국립극장 등 국립기관이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종목 지정 추진
- 예비목록 및 운영방식 등 마련('24.상), 보유단체 불인정 사유(국립기관에 의해 전승 지속성 유지되는 경우) 등 법령 개정('24.하)

4)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개선

- 단체종목 분류에 따른 보유단체 인정 기준 일체화
- 대규모 의례, 대동놀이·축제 종목의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전환 계속('07년부터 추진)

라. 의결사항

- 원안 접수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22명, 원안 접수 22명

바. 특이사항

- 없음